직제 및 사무분장 규정

제 1 장 총 칙

-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7장 제2절과 학칙 제15장의 규정에 의하여 호서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직제와 각 부서별 소관 사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 (위임전결) 이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각 부서의 위임전결은 따로 정한다.

제 2 장 총장, 부총장

- 제 3조 (총장) ① 총장은 본 대학교를 대표하며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 ② 총장직속으로 교목실·비서실, 법무실, 생명윤리위원회,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인권센터를 둔다. 교목실장, 동물실험윤리위원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인권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며, 비서실장, 법무실장 및 생명윤리위원회위원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참사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고, 법무부실장, 인권부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주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개정 2010. 2. 18, 2011. 3. 1, 2012. 10. 23, 2014. 1. 13, 2015. 5. 1, 2018. 5. 17, 2018. 12. 12., 2020. 11. 9., 2022. 8. 25.)
 - ③ 총장직속기관으로 산학협력단·특화사업단·미래혁신융합교육원·국책사업단, 벤처프런티어교육원을 두며, 단장(원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특임교수로, 직원인 경우는 부참사 이상으로 보한다. 단, 산학협력단장은 부교수 이상 교원 또는 특임교수로, 직원인 경우는 부참여 이상으로 보한다. (개정 2010. 2. 18, 2012. 6. 20, 2013. 7. 22, 2019. 8. 1, 2020. 2. 28., 2020. 11. 9., 2023. 2. 17., 2023. 6. 15.)
 - ④ <삭제 2009. 3. 1>
 - ⑤ <삭제 2009. 3. 1>
 - ⑥ 실장 유고 시에는 부실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총장이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
- 제 4조 (부총장) ① 부총장으로 학사부총장, 산학부총장, 대외협력부총장, 정책부총장, 특임부총장을 둘수 있으며 부교수 이상 또는 참여로 보하고,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는 학사부총장이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단, 특임부총장은 3인까지 둘 수 있다. (개정 2009. 3. 1, 2018. 7. 11., 2023. 2, 17.)
 - ② <삭제 2015. 5. 1>
 - ③ <삭제 2015. 5. 1>
 - ④ 각 부총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통할한다.(신설 2015. 5. 1, 개정 2018. 7. 11)
 - 1. 학사부총장 : 대학의 교육·연구 전반에 관련된 업무
 - 2. 산학부총장 : 산학협력단 및 산학관련 대학 국책사업에 관련된 업무
 - 3. 대외협력부총장 : 대학의 대외협력 전반에 관련된 업무
 - 4. 정책부총장 : 대학의 주요 정책 추진에 관련된 업무
 - 5. <삭제 2023. 2. 17>
 - 6. 특임부총장 : 총장의 특명 및 지시사항에 관련된 업무
 - ⑤ 학사부총장 직속기관으로 공학교육혁신센터를 두며, 이에 관한 운영 규정은 따로 정한다.
 - ⑥ <삭제 2023. 2. 17>

- ⑦ <삭제 2020. 11. 9.>
- ⑧ 제4항의 대외협력부총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외협력보좌관을 두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주사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신설 2019, 8, 1)

제 3 장 산학협력단 (신설 2009. 3. 1)

- 제 4조의 2 (산학협력단) ① 산학협력단에는 산학감사실, 산학행정팀, 연구팀, 산학협력팀, 기술사업화팀을 두며, 산학감사실에는 실장을 둘 수 있고, 각 팀에는 팀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 3. 1, 2011. 6. 29, 2012. 6. 20, 2013. 3. 25, 2015. 5. 1, 2016. 7. 1., 2021. 6. 30., 2023. 2. 17.)
 - ② 부단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부참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고, 팀장은 주사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개정 2009. 3. 1, 2011. 6. 29, 2015. 5. 1)
 - ③ 단장 유고 시에는 부단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총장이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
 - ④ 기타 산학협력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 4 장 교 직 원

- **제 5조 (교원)** ① 교원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분류한다. (개정 2012. 6, 20)
 - ② 교원의 정원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충원계획은 총장이 정한다.
 - ③ 제1항의 교원 이외에 명예교원, 겸임교원, 특별임용교원 및 강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2. 17)
- 제 6조 (일반직원) ① 일반직원의 직종별 정원은 정관의 "별표 2"에 의하며, 직급별 정원 및 각 행정· 처팀의 정원은 총장이 별도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2. 6. 20)
 - ② 제1항의 직원 이외에 별정직(전문직)과 임시직원을 둘 수 있다.

제 4 의 2 장 <삭제 2023. 2. 17>

제 6조의 2 <삭제 2023. 2. 17> 제6조의 3 <조 이동 2023. 2. 17> 제6조의 4 <삭제 2019. 8. 1> 제6조의 5 <조 이동 2023. 2. 17>

제 5 장 대학본부

- 제 7조 (본부의 조직) ① 본 대학교 본부에는 기획처, 교무처, 학생처, 입학처, 교육혁신처, 대외협력처, 국제협력처, 사무처, 재무처를 둔다.(별첨1. 기구표 참조) (개정 2010. 2. 18, 2011. 6. 29, 2012. 6. 20, 2012. 10. 23, 2013. 3. 25, 2013. 7. 22, 2014. 1. 13, 2014. 9. 1, 2015. 5. 1, 2016. 2. 29, 2016. 7. 1, 2017. 11. 1, 2018. 5. 17, 2018. 7. 11, 개정 2018. 12. 12, 2019. 5. 14, 2019. 8. 1, 2020. 1. 28, 2020. 2. 28., 2020. 11. 9., 2023. 2. 17.)
- ② 교무처장, 교육혁신처장, 학생처장은 부교수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기획처장, 입학처장, 대외협력 처장, 국제협력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참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하며, 사무처장, 재무처장은 부 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부참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개정 2010. 2. 18, 2011. 6. 29, 2012. 6. 20, 2012. 10. 23, 2013. 3. 25, 2015. 5. 1, 2018. 5. 17, 2018. 7. 11, 2020. 1. 28, 2020. 2. 28., 2020. 11. 9.,

2023. 2. 17.)

- ③ 처장 유고 시에는 부처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총장이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
- ④ 제2항의 각 처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처장을 둘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주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제 8조 <삭제 2004. 2. 26>

제 9조 (교무처) 교무처에 교무팀, 학사팀, 교육성과관리센터, 교수역량지원센터를 두며 각 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주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개정 2018. 12. 12, 2020. 4. 14., 2020. 11. 9., 2022. 8. 25., 2023. 2. 17.)

제10조 (학생처) 학생처에 학생장학팀, 장애학생지원센터, Caritas봉사센터, 보건진료센터를 두며 팀장은 주사이상으로 보하고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주사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개정 2018. 12, 12, 2020, 2, 28, 2020, 11, 9, 2023, 2, 17,)

제11조 <삭제 2015. 5. 1>

제 12조 <삭제 2018. 7. 11>

제13조 (기획처) 기획처에 기획예산팀, 기획평가팀 두고 팀장은 주사이상으로 보한다.(개정 2018. 12. 12, 2019. 8. 1, 2020. 1. 28, 2020. 4. 14., 2020. 11. 9., 2021. 6. 30., 2023. 2. 17.)

제14조 <삭제 2010. 9. 15>

제14조의 2 (입학처) 입학처에 입학사정관실, 호서교육기부센터와 입학팀을 두며 입학사정관리실장 및 호서교육기부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석사학위 이상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직원으로 보하고 입학팀장은 주사이상으로 보한다. (개정 2010. 6. 11, 2015. 5. 1, 조변경 2015. 5. 1, 2019. 8. 1.)

제14조의 3 <삭제 2023. 2. 17>

제14조의 4 <삭제 2014. 9. 1>

제14조의 5 <삭제 2018. 7. 11>

제14조의 6 <삭제 2020. 11. 9.>

제14조의 7 (교육혁신처) 교육혁신처에 교육혁신팀, 취업팀, 학습역량지원센터, 원격교육지원센터, 학생IR센터, 창업교육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 카리타스상담센터를 두며 팀장은 주사 이상으로 보하고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주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신설 2020. 2. 28. 개정 2022. 8. 25., 2023. 2. 17.)

제14조의 8 (대외협력처) 대외협력처에 대외협력홍보팀, 호서브랜드디자인센터, 호서브랜드미디어센터를 두며 팀장은 주사 이상으로 보하고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주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23, 2, 17.]

제14조의 9 (국제협력처) 국제협력처에 국제업무팀, 유학생상담센터를 두며 팀장은 주사 이상으로 보하고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주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23, 2, 17.]

제14조의 10(사무처) 사무처에 연구실안전관리센터, 총무팀, 관리팀, 시설팀, 천안관리팀, 산학융합캠퍼 스관리팀을 두며 팀장은 주사이상으로 보하고,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주사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조변경 2015. 5. 1, 개정 2015. 5. 1, 2016. 2. 29, 2017. 5. 1, 2018. 5. 17, 2018. 12. 12, 2019. 03. 28, 2019. 8. 1., 2020. 9. 8., 2020. 11. 9.)

[제6조의3에서 이동 2023. 2. 17.]

[제목개정 2020, 11, 9.]

제14조의 11(재무처) 재무처에 회계팀, 구매팀을 두며, 각 팀장은 주사이상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20. 11. 9.] [제6조의5에서 이동 2023. 2. 17.]

제 6 장 단과대학 및 대학원, 특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 제15조 (단과대학, 대학원, 특수·전문대학원) ① 단과대학, 대학원, 특수·전문대학원의 설치 및 그 과정과 학과·학부(전공)의 편성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별첨1. 기구표 참조)(개정 2019. 8. 1, 2020. 1. 28, 2020. 2. 28)
 - ② 단과대학장과 대학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
 - ③ 단과대학 및 대학원에 종합행정팀, 교학팀을 둘 수 있으며, 대학원에 대학원글로벌연구지원센터, 대학원생지원센터를 둔다. 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주사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단, 미래융합대학의 경우 성인학습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개정 2011. 3. 1, 2013. 3. 25, 2015. 5. 1, 2019. 5. 14, 2020. 2. 28)
 - ④ <삭제 2015. 5. 1>
 - ⑤ 특수·전문대학원에 교학팀을 둘 수 있으며, 팀장은 참사 또는 부참사, 주사로 보한다.
 - ⑥ 단과대학장과 대학원장을 보좌하기 위해 부학장 및 부원장을 둘 수 있으며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 ⑦ 공과대학 산학융합캠퍼스에 학사·연구·행정을 총괄하는 캠퍼스장을 두며, 캠퍼스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주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신설 2020. 1. 28)
 - ⑧ 더:함교양대학에 교양교육센터를 둔다. 교양교육센터에 센터장, 부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 원으로 보한다. (신설 2022. 8. 25.)

제 7 장 부 속 기 관 등

- 제16조 (부속기관) ① 본 대학교의 부속기관으로 중앙도서관, 전산정보원, 평생교육원, 자연사박물관, 생활관, 출판부, 대학언론사, ART SPACE HOSEO, 교육연수원, 생활체육지도자 연수원, 보육교사교육원, 어린이집, 호서대학교 직장어린이집, 웰니스센터, 예비군연대, 학생군사교육단을 둔다.(별첨1. 기구표 참조) (개정 2010. 2. 18, 2010. 9. 15, 2011. 3. 1, 2012. 6. 20, 2012. 10. 23, 2013. 3. 25, 2013. 7. 22, 2015. 4. 20, 2015. 5. 1, 2016. 2. 29, 2017. 5. 1, 2017. 11. 1, 2020. 1. 28, 2020.08.12., 2020. 11. 9., 2023. 2. 17.)
 - ② 중앙도서관에는 학술팀을 두고 평생교육원에는 교학팀을 두며, 국제협력원에는 국제업무팀, 유학생상담센터를 둔다.(개정 2010. 2. 18, 2010. 9. 15, 2012. 6. 20, 2012. 10. 23, 2013. 3. 25, 2015. 5. 1, 2020.08.12.)
 - ③ <삭제 2010. 2. 18>
 - ④ <삭제 2010. 2. 18>
 - ⑤ <삭제 2010. 2. 18>
 - ⑥ 전산정보원에 LMS지원센터, 정보보호팀, 전산운영팀을 두며, 팀장은 주사이상으로,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주사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신설 2020. 11. 9.)
- 제17조 (부속기관장) ① 부속기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특임교수로, 직원인 경우는 부참사 이상으로 보하며, 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 및 평생교육원은 별도로 정한다. 다만, 평생교육원에는 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원장을 둘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주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0. 2. 18, 2017. 11. 1, 2019. 03. 28., 2023. 2. 17.)
 - ② 부속기관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17조의 2 (기타기관) ① 본 대학교에 예비군연대를 두며 햣토예비군설치법에 따른다.

② 본 대학교에 학생군사교육단을 두며 학생군사교육실시령에 따른다.

제 8 장 부설연구소 및 위원회

- **제18조 (부설연구소)** ① 본 대학교의 연구소는 다음과 같이 기본연구소, 교책연구소, 일반연구소 및 산학연구소로 구분한다. (개정 2016. 12. 10, 2017. 5. 1, 2017. 6. 20.)
 - 1. 기본연구소는 인문사회과학연구소, 기초과학연구소, 공업기술연구소, AI융합연구소, 문화·예술· 스포츠 융합연구소, 미래융합기술연구소를 둔다.(개정 2017. 5. 1, 2018. 12. 12, 2020. 1. 28, 2022. 3. 1., 2023. 2. 17.)
 - 2. 교책연구소, 일반연구소 및 산학연구소는 "별첨 2"와 같이 둔다. (개정 2012. 6. 20, 2013. 7. 22, 2014. 1. 13, 2015, 5, 1, 2016. 2. 29, 2016. 12. 10, 2017. 5. 1, 2017. 6. 20, 2017. 11. 1, 2018. 5. 17, 2018. 6. 15, 개정 2018. 12. 12, 2019. 03. 28, 2019. 5. 14, 2019. 8. 1., 2020.08.12., 2020. 11. 9., 2021. 5. 27., 2022. 8. 25., 2023. 2. 17..)
 - 3. <삭제 2010. 2. 18>
 - ② 부설연구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제19조 (부설연구소장) 부설연구소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한다.

제20조 (위원회) ① 본 대학교의 주요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각종 위원회의 설치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제 9 장 사 무 분 장

제21조 (적용)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22조 (관련업무의 처리) 업무단위가 2개 이상의 실·처·팀에 관련되는 사항은 가장 관계가 깊은 실·처·팀에서 처리한다.

제 1 절 교 목 실

제23조 (교목실) 교목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설립정신(기독교정신) 구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2. 교직원 및 학생의 신앙지도
- 3. 학생채플
- 4. 교직원 예배
- 5. 교직원 및 학생의 신앙상태 조사 및 분석
- 6. 동문성직자 파악 및 제반 사항
- 7. 선교관련 사항
- 8. 신앙상담
- 9. 대학교회 운영관리
- 10. 학생 신앙 써클 지도
- 11. 지역사회교회와 유대강화 및 협조
- 12. 교목실 소관 위원회 및 성서연구회 운영
- 13.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24조 <삭제 2004. 2. 26>

제 2 절 비 서 실

제24조의 2 (비서실) 비서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총장, 부총장 의전에 관한 업무
- 2. 총장, 부총장 내빈 의전에 관한사항
- 3. 총장, 부총장 대·내외 일정조정 및 수행에 관한 사항
- 4. 총장, 부총장의 결재문서 관리 및 통제
- 5. 총장, 부총장의 일상업무 보좌 및 공·사신 처리
- 6. 총장, 부총장이 지시하는 사항
- 7. 총장, 부총장이 주재하는 회의자료 점검 및 준비에 관한 사항
- 8. <삭제 2009. 3. 1>
- 9.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 3 절 법 무 실 (절 변경 2015. 5. 1., 2018. 5. 17., 2020. 11. 9.)

제24조의 3 <삭제 2012, 10, 23>

제24조의 4 <삭제 2015. 5. 1>

제24조의 5 <삭제 2015. 5. 1>

제24조의 6 <삭제 2015. 5. 1>

제24조의 7 (법무실) 법무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15. 5. 1, 개정 2016. 12. 10, 2018. 5. 17., 2 020. 11. 9.)

- 1. 각 기관·부처별 행정·회계 점검 업무
- 2. 특별사안에 대한 점검 업무
- 3. 행정·회계·특별사안 점검결과에 따른 처분
- 4. 법률자문 업무
- 5. 청탁방지 관련 업무
- 6. 2,000만원 초과 예산 집행 시 적절성 확인 업무(통상적인 예산 집행 제외)
- 7. 위 각호에 부수되는 업무

[제목개정 2018. 5. 17., 2020. 11. 9.]

제3의 2절 대외협력실<삭제 2018. 12. 12>

제24조의 8 <삭제 2018, 12, 12>

제24조의 9 <삭제 2018, 12, 12>

제3의 3절 생명윤리위원회 (절 신설 2018. 5. 17., 개정 2022. 8. 25.)

제24조의 10 (생명윤리위원회) 생명윤리위원회 사무국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15. 5. 1., 개정 2022. 8. 25.)

- 1.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 2. 연구계획서 심의
- 3. 위원회에서 승인한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 감독
- 4. 생명윤리와 관련 교육지원
- 5. 취약한 연구대상자등의 보호 대책 수립
- 6.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본조신설 2018. 5. 17.] [제24조의 8에서 이동 2018. 5. 17]

제3의 4절 인권센터(절 신설 2022, 8, 25,)

제25조의 1 (인권센터) 인권센터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대학 내 인권침해 피해 예방 및 대응 업무
- 2. 인권침해 사건 상담, 조사 및 처리 등
- 3.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3의 5절 동물실험윤리위원회(절 신설 2022. 8. 25.)

제25조의 2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동물윤리 및 동물복지를 확보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 2.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운영
- 3. 위원회에서 승인한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 감독
- 4. 동물윤리와 관련 교육지원
- 5.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 4 절 산 학 협 력 단

제25조 <삭제 2004. 2. 26>

제26조 <삭제 2009. 3. 1>

제26조의 1 <삭제 2009. 3. 1>

제26조의 2 <삭제 2009. 3. 1>

제26조의 3 <삭제 2015. 5. 1>

제26조의 4 <삭제 2011. 6. 29>

제26조의 5 <삭제 2011. 6. 29>

제26조의 6 <삭제 2015. 5. 1>

제26조의 7 <삭제 2015. 5. 1>

제26조의 8 <삭제 2015. 5. 1>

제26조의 9 <삭제 2011. 6. 29>

제26조의 10 <삭제 2012. 6. 20>

제26조의 11 <삭제 2015. 5. 1>

제26조의 12 (산학감사실) 산학감사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 5. 1)

- 1. 산학협력단 운영전반에 걸친 정기 감사 실시(년 1회 이상)
- 2. 산학협력단 연구비 운영에 관한 상시 감사 실시
- 3. 기타 총장 및 단장의 지시에 의한 특별감사 실시
- 4.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26조의 13 (산학행정팀) 산학행정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 5. 1., 개정 2021. 6. 30.)

- 1. 산학협력단 관련 규정의 통합 관리
- 2. 단장 직인관수 및 법인 사무 관련 제반 업무
- 3.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등 위원회의 운영 지원
- 4. 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의 발전기금 관리
- 5. 산학협력단 소속 직원(연구원 및 조교 등을 포함한다)의 인사, 평가, 상벌 및 근태관리 등에 관한 업무
- 6. 산학협력단 소속 직원(연구원 포함)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

- 7. 산학협력단 예 · 결산 및 세무업무
- 8. 산학협력단 검수 및 시설, 자산관리에 관한 업무
- 9. 산학협력단 조직 관리 및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
- 10.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
- 11. 산학협력단 자금지출 및 현황 관리
- 12. 산학협력단 전기, 소방, 위험물 등 안전점검 및 각종 유지보수
- 13.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

제26조의 14 (연구팀) 연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15. 5. 1, 개정 2016. 7. 1., 2023. 2. 17.)

- 1. 연구정책 계획 업무
- 2. 각종 연구관련 통계자료의 수집 · 분석 · 관리 업무
- 3. 연구지원제도 개선 및 기획 업무
- 4. <삭제 2023. 2. 17>
- 5. <삭제 2023. 2. 17>
- 6. <삭제 2023. 2. 17>
- 7. 기타 교비연구지원제도 운영 업무
- 8. 연구조교 배정 및 과제 관리 업무
- 9. 국제학술지 투고 논문 번역 및 교정 지원업무
- 10. 학술 회의 참가 및 개최 지원 업무
- 11. 대학 부설연구소 관련 업무
- 12. 연구과제 수주와 관련한 대외 기관 협조체제 구축 및 관리
- 13. 연구과제의 기획과 관련한 전문 분석자료 제공 및 연구계획서 작성 지원
- 14. 교외 연구과제의 관리(연구 노트 포함)
- 15. 교외 연구비 관리(중앙관리)
- 16. 연구 간접비의 징수
- 17. 교외연구 관련 각종 제위원회의 운영
- 18. <삭제 2023. 2. 17>
- 19.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

[제목개정 2016. 7. 1.]

제26조의 15 (산학협력팀) 산학협력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15. 5. 1., 개정 2021. 6. 30.)

- 1. 산학협력사업과 국책사업의 기획 참여, 신청 및 유치 지원
- 2. 산학협력 및 국책사업과 관련한 각종 통계자료의 작성, 수집, 분석 및 관리
- 3. 산학협력과 관련한 정부(출연연구기관 포함)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 4. 개별 국책사업단(센터 포함)과의 협조체제 유지 및 지원
- 5. 산업체 계약형학과, 위탁교육 유치 및 운영(CEO 과정 등 포함)
- 6. 국내 · 외 교육사업 기획 및 추진
- 7.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공용 장비의 통합 관리 체계 구축 및 총괄 운영
- 8. 대학 내 고가 기자재 및 연구 장비에 대한 산업체 지원 체계 구축 및 운영
- 9. 산학협력단의 장비도입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토 및 수요조사 실시
- 10. 산학협력단 내 장비관련 부서의 업무 통할
- 11. 장비를 활용한 자체 수익사업의 기획 및 추진
- 12. 발전기금 조성
- 13. 기업협력지원 및 가족기업 관리
- 14. 산학협력단 자체 수익사업의 기획 및 운영

- 15. 산학협력단 운영과 관련한 기본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 16. 산학협력라운지 운영 및 관리
- 17. 산학협력단 소속 센터 관리 및 지원
- 18. <삭제 2023. 2. 17>
- 19.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

[제목개정 2023. 2. 17.]

제26조의 16 (기술사업화팀) 기술사업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계획수립 및 시행
- 2. 기술지주회사 연계협력 및 활성화 지원
- 3. 보유 기술 분석, 가치 및 시장성 평가
- 4. 교원, 학생 기술사업화 관련 업무
- 5. 기술이전 관리 업무
- 6. 지식재산 출원 등록, 유지 및 관리업무
- 7. 지식재산 활용계획 수립 및 시행
- 8. 우수 지식재산 확보방안 수립 및 시행
- 9. 지식재산 관련 제규정 및 시스템 관리
- 10. 지식재산 및 기술이전, 기술사업화 관련 위원회 운영 업무
- 11. 기술사업화 관련 투자대상 발굴, 검토 업무12.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활동에 관한 업무13. 대학 내 기술사업화 관련 조직간 상호 협력 업무
- 14.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업무

[본조신설 2018. 5. 17.]

제 5 절 교육혁신처(절 변경 2015. 5. 1, 2017. 5. 1, 2017. 11. 1, 2018. 12. 12)

제27조 <삭제 2012. 10. 23>

제27조의 2 <삭제 2014. 1. 13>

제27조의 3 <삭제 2014. 1. 13>

제27조의 4 <삭제 2015. 5. 1>

제27조의 5 (교육혁신팀) 교육혁신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16. 2. 29, 개정 2017. 5. 1,

2018.12. 12, 2019. 5. 14., 2023. 2. 17.)

- 1. 학생역량지원센터, 원격교육지원센터, 학생IR센터 행정지원/관리
- 2. <삭제 2019. 5. 14>
- 3. 교육혁신처 소관 위원회 운영, 관리
- 4. 핵심역량 증진을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지원
- 5. <삭제 2020. 2. 28>

[제목개정 2018 12. 12]

제27조의 6 <삭제 2017. 5. 1>

제27조의 7 <삭제 2018, 12, 12>

제27조의 8 (학습역량지원센터) 교수학습센터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15. 5. 1, 조이동 2016.

- 2. 29, 개정 2017. 5. 1, 2019. 03. 28, 2019. 5. 14., 2023. 2. 17.)
- 1. 학습법에 관한 연구 및 정보 제공
- 2. 학습법에 관한 교육 및 워크숍 개최
- 3. <삭제 2019. 5. 14>
- 4.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상담

- 5. 학습공동체 운영 관리
- 6. 학습역량지원센터 홈페이지 운영 관리
- 7. <삭제 2019. 5. 14>
- 8. <삭 제 2019. 03. 28>
- 9. <삭제 2019. 5. 14>
- 10. 수월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 11. <삭제 2019. 5. 14>
- 12.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목개정 2023. 2. 17]

제27조의 9 <조 이동 2022. 8. 25.>

[제목개정 2016. 2. 29]

제27조의 10 <삭제 2018, 12, 12>

제27조의 11 <삭제 2017. 11. 1>

제27조의 12 <삭제 2019. 03. 28>

제27조의 13 <삭제 2017, 11, 1>

제27조의 14 <조 이동 2022.. 8. 25.>

[제30조의 4에서 이동 2018. 12. 12]

제27조의 15 <삭제 2019. 5. 14>

제27조의 16 (원격교육지원센터) 원격교육지원센터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조신설 2019. 5. 14., 개정 2021. 3. 9., 2022. 8. 25., 2023. 2. 17.)

- 1. 원격수업을 위한 콘텐츠 제작 지원
- 2. MOOC 콘텐츠 개발 및 운영지원
- 3. 학생역량관리시스템(CanDo시스템) 관리
- 4.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27조의 17 (학생IR센터) 학생IR센터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조신설 2022. 8. 25.)

- 1. 핵심역량, 전공능력에 대한 조사 및 연구
- 2. 교육수요자 만족도 조사 개발, 운영, 관리 및 환류
- 3. 학생 데이터 수집·관리·활용에 대한 계획·조사
- 4.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27조의 18 (취업팀) 취업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조변경 2012, 10, 23, 2012, 12, 4, 조변경 2015,

- 5. 1, 개정 2015. 5. 1)
- 1. 취업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 2. 취업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관한 업무
- 3. 취업지도, 안내 및 알선에 관한 업무
- 4. 취업교류 협력을 위한 기업체 방문에 관한 업무
- 5. 취업관련 특강 및 행사에 관한 업무
- 6. 학생 부업알선에 관한 업무
- 7. 취(부)업 관련 각종 통계작성에 관한 업무
- 8. 취업 관련 소관위원회 운영
- 9.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37조의 2에서 이동 2023. 2. 17]

제27조의 19 (창업교육센터) 창업교육센터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벤처·창업 교육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 2. 벤처·창업 교육 운영
- 3. 창업교육 관련분야의 콘텐츠 개발 및 운영
- 4. 창업교육과 관련한 인력양성 과정 개발 및 운영
- 5. 창업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성과 평가 및 환류 지원
- 6.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27조의 11에서 이동 2017. 11. 1.. 제37조의 6에서 이동 2023. 2. 17]

제27조의 20 (현장실습지원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15. 5. 1, 조이동 20

- 16. 2. 29, 개정 2017. 5. 1, 조이동 2018. 12. 12)
- 1. 현장실습 시행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 대학 내 현장실습 등 산학협력 관련 교과 및 비교과와 관련된 업무 통합 지원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3. 현장실습을 확산하기 위한 각종 행사 및 활동의 기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4. 현장실습과 연계된 산학프로그램의 기획 수립·운영 및 확대, 성과 평가 및 환류 지원에관한 사항
- 5. 현장실습지원센터 업무 수행을 위해 대학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연계에 관한 사항
- 6.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27조의 7에서 이동 2018. 12. 12... 제37조의 7에서 이동 2023. 2. 17]

제27조의 21 (카리타스상담센터) 카리타스상담센터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및 만족도 향상과 인성함양 및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2. 학생 및 교직원 상담 지원
- 3. 직무관련 통계, 분석 및 보고, 기록물 관리
- 4. 학생지도, 상담을 위한 전문요원 실무 교육 및 연구 활동
- 5. <삭제 2022. 2. 9>
- 6. <삭제 2022. 2. 9>
- 7. <삭제 2022. 2. 9>
- 8. <삭제 2019. 5. 14>
- 9.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27조의 9에서 이동 2022, 8, 25., 제37조의 9에서 이동 2023, 2, 17]

제 5 의 2 절 공학교육혁신센터(절 신설 2016. 2. 29)

제27조의 22 (공학교육혁신센터) 공학교육혁신센터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15. 5. 1, 조이동 2 016. 2. 29, 2017. 5. 1, 2018. 12. 12, 조변경 2019. 5. 14)

- 1. 공학교육혁신지원사업 총괄 계획 수립
- 2. 공학교육혁신지원사업 운영, 관리
- 3. 공학교육인증제 지원, 관리
- 4. 공학교육 학습공동체 운영, 관리
- 5.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 6 절 기 획 처

제28조 <삭제 2012. 10. 23> 제28조의 2 <삭제 2011. 3. 1> 제28조의 3 <삭제 2012. 10. 23>

제28조의 4 <삭제 2015. 5. 1>

제28조의 5 <삭제 2015. 5. 1>

제28조의 6 (기획예산팀) 기획예산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조변경, 신설 2015. 5. 1, 개정 2018. 5. 17, 2018. 12. 12, 2019. 03. 28, 2019. 8. 1, 2019. 10. 28., 2020. 9. 8., 2020. 11. 9., 2021. 6. 30., 2023. 2. 17.)

- 1. 기획처장 직인관수
- 2. 대학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정리 업무
- 3. 기획 관련 소관 위원회 운영
- 4. 행복기숙사 설립 및 호서대학교공공기숙사 유한회사 업무지원
- 5. 공간관리 제반 규정의 제 · 개정
- 6. 공간관리위원회 운영
- 7. 공간의 배정(재배치), 용도 변경
- 8. 공간관리 프로그램 관리 호실 관련 DATA입력 관리(호실명 등)
- 9. 공간관리 현황 통계관리
- 10. 공간관리 프로그램 관리(유지보수, 수정 등)
- 11. 공간사용료 부과 결정, 기타 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공
- 12. 예산편성 및 조정 업무
- 13. 예산집행 및 통제 업무
- 14. 예산통계 및 분석 업무
- 15. 교직원 보수기준 및 강사료 책정 업무
- 16. 납입금 등 제비용 기준 수립에 관한 업무
- 17. 기금 운영 계획 수립 및 관리 업무
- 18. 기채에 관한 업무
- 19. 예산 관련 소관 위원회 운영
- 20.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업무
- 21. 대학 경영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업무
- 22. 대학 특성화 기본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업무
- 23. 새로운 프로젝트 기획 업무
- 24. 총장의 특명사항 처리 및 추진관리 업무
- 25. 국책사업 검토, 유치 지원 업무
- 26. 지자체사업 검토, 유치 지원 업무
- 27.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목개정 2020. 11. 9.]

제28조의 7 <삭제 2018. 5. 17>

제28조의 8 <삭제 2018. 5. 17>

제28조의 9 <삭제 2020. 1. 28, 특성화추진단>

제28조의 10 <삭제 2018, 12, 12>

제28조의 11 <삭제 2023, 2, 17>

제28조의 12 (기획평가팀) 기획평가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 6. 30., 개정 2023. 2. 17.)

- 1. 정책연구 기획 및 추진 관리 업무
- 2. 학부 및 대학원 학사구조개혁 업무
- 3. 대학 및 산학협력단 조직 및 직제 개편 업무
- 4. 각 부서 및 기관 업무조정에 관한 업무
- 5. 계약학과 설립 업무

- 6. 표준분류 관리 업무
- 7. 학과평가 업무
- 8. 제 규정의 제정, 개·페 및 규정집 발간 업무
- 9. 정보공개 업무
- 10. 대학평의원회 운영 관리 업무
- 11. 대학통계 관리 업무(대학정보공시, 교육통계, 시설통계, 일반현황, 연혁관리 등)
- 12. 대학종합평가(대학기본력량진단, 대학기관평가인증) 업무
- 13. 대학 자체평가 업무(고등교육법 제11조2)
- 14. 대학 학문분야 평가 지원 업무
- 15. 기타 대외평가 업무 및 지원 업무
- 16. 각 기관·부처 경영평가 업무
- 17. 행정부서 성과평가 업무
- 18. 국책사업 총괄 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 19. 국책사업 운영지원, 재정, 사업조정에 관한 제반 업무
- 20. 국책사업 관련 제반서류 및 자료의 수집·정리·평가·조정·재정·분석의 업무
- 21. 국책사업관련 제위원회 관리에 관한 업무
- 22. 기타 각 사항에 부수되는 업무

[제목개정 2023. 2. 17.]

제28조의 15 <삭제 2020. 11. 9.>

제28조의 16 <삭제 2020. 11. 9.>

제28조의 17 <조 이동 2023. 2. 17>

제28조의 18 <조 이동 2023. 2. 17>

제28조의 19 <조 이동 2023. 2. 17>

제 7 절 교 무 처

제29조 (교무팀) 교무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4. 14., 2020.08.12., 2020. 11. 9., 2021. 3. 9.)

- 1. 교무처장 직인 관수
- 2. 교원의 인사 관련 업무
- 3. 교수업적평가 관련 업무
- 4. 교수연수 관련 업무
- 5. 교수회의 및 교무위원회 관련 업무
- 6. 교원 연구년 파견 업무
- 7. 교원 국외여행 승인 및 보고
- 8. 조교 임용 관리 업무
- 9. 교원 및 조교의 제 증명 발급
- 10. 교원의 타교출강 및 대학 간 교류교수 승인
- 11. 교무 관계 제 규정 운영
- 12. 교무 관계 제반 통계업무
- 13. 교원의 업적물 관리에 관한 사항
- 14. <삭제 2012. 10. 23>
- 15. 학력조회 및 회보에 관한 업무
- 16. 교무업무 관련 소관 위원회 운영
- 17. <삭제 2012. 10. 23>

- 18. <삭제 2012. 10. 23>
- 19. <삭제 2012. 10. 23>
- 20. <삭제 2020. 11. 9.>
- 21. <삭제 2020. 11. 9.>
- 22. <삭제 2020. 11. 9.>
- 23. <삭제 2020. 11. 9.>
- 24. <삭제 2020. 11. 9.>
- 25. <삭제 2020. 11. 9.>
- 26. <삭제 2020. 11. 9.>
- 27.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30조 (학사팀) 학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조변경 2015. 5. 1, 개정 2019. 10. 28, 2020. 4. 14, 2020. 11. 9.)

- 1. 학사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학사력 간행
- 2. 학칙 등 학사관리 관련 제 규정 관리
- 3. 교육과정의 편성 및 방침 수립
- 4. 수업시간표 작성, 수강신청 및 변경
- 5. 시험 관리에 관한 업무
- 6. <삭제 2009. 3. 1>
- 7. 강사료 지급 발의 (개정 2012, 10, 23)
- 8. <삭제 2019. 10. 28>
- 9. <삭제 2012. 10. 23>
- 10. <삭제 2012. 10. 23>
- 11. 졸업(학위수여)에 관한 업무(졸업논문 및 졸업종합시험 관리 포함)
- 12. 등록대상자 확인 관리 및 환불에 관한 업무
- 13. 학적부 전산입력 및 보관 관리 업무
- 14. 휴학, 복학, 제적, 퇴학, 재입학, 복적, 전과, 전학에 관한 사항
- 15. 학력조회 및 회보에 관한 업무
- 16. 학번부여 및 학생의 정원관리 업무
- 17. 미등록, 미복학, 학사경고, 유급에 관한 사항
- 18. 학적 및 성적처리에 관한 업무
- 19. 학적관련 제반 통계 업무
- 20. 학부 요람발간(한글)
- 21. 인쇄실 운영
- 22. 학군단 지원 업무
- 23. 수업, 졸업 및 학적 관련 소관 위원회 운영
- 24. 강의실 관리
- 25. 휴강, 결강 및 보강처리
- 26. 결·보강 신청서 접수, 공결원 처리, 수업계획서/수업반응도 관리
- 27. 계절학기 교과목신청서 접수
- 28. 제증명 발급
- 29. <삭제 2020. 11. 9.>
- 30. <삭제 2020. 11. 9.>
- 31. <삭제 2020. 11. 9.>
- 32. <삭제 2020. 11. 9.>

- 33. <삭제 2020. 11. 9.>
- 34.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30조의 2 <삭제 2013. 3. 25>

제30조의 3 <삭제 2016. 7. 1>

제30조의 4 <삭제 18, 12, 12>

제30조의 5 <삭제 2020. 11. 9.>

제30조의 6 <삭제 2020. 11. 9.>

제30조의 7 (교육성과관리센터) 교육성과관리센터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대학교육목표와 인재상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연구, 개발
- 2. 교육과정 혁신을 위한 교육의 질 관리
- 3. 호서교육인증제 연구 및 운영
- 4. 핵심역량·전공역량 개발 및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
- 5. <삭제 2022.9.1.>
- 6. <삭제 2022.9.1.>
- 7. 호서서포터즈 운영
- 8.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27조의 14에서 이동 2022. 8. 25.]

제30조의 8 (교수역량지원센터) 교수역량지원센터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교수법에 관한 연구 및 정보 제공
- 2. 교수법에 관한 교육 및 워크숍 개최
- 3. 강의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상담
- 4.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본조신설 2023. 2. 17]

제 8 절 학생처

제31조 (학생장학팀) 학생장학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 6. 29, 조변경 2012. 10. 23, 2012. 12. 4, 개정 2013. 7. 22, 조변경 2015. 5. 1., 개정 2023. 2. 17)

- 1. 학생처장 직인 관수 (개정 2012. 10. 23)
- 2. 총학생회 활동지도
- 3. 학생회비 수입 지출 및 장부 정리
- 4. 학생 동아리활동, 과외활동의 지도 및 지원 업무
- 5. 학생 국내 연수교육 업무
- 6. 학생동원 및 행사지도 업무
- 7. 학생 상벌 관계 업무
- 8. 학생 간행물 및 광고물 지도
- 9. 학생증 발급업무 (개정 2012. 10. 23)
- 10. <삭제 2012. 10. 23>
- 11. <삭제 2012. 10. 23>
- 12. 학생 후생복지에 관한 업무
- 13. <삭제 2012. 10. 23>
- 14. 학생동아리 우편물 배분
- 15. 운동부 운영관리 및 행정지원
- 16. <삭제 2015. 1. 26>
- 17. 학생지원 업무관련 각종 조사 통계업무
- 18. 신문사, 방송국 등 지도업무

- 19. 학생지원 관련 소관 위원회 운영
- 20. 교내 차량 관리 업무
- 21. 보건진료센터 관리
- 22. 천안캠퍼스 우편물 관리 업무 (신설 2013. 7. 22)
- 23. <삭제 2020. 2. 28>
- 24. <삭제 2020. 2. 28>
- 25. <삭제 2020. 2. 28>
- 26. <삭제 2020. 2. 28>
- 27. <삭제 2020. 2. 28>
- 28. <삭제 2020. 2. 28>
- _____
- 29. <삭제 2020. 2. 28>
- 30. 학생차량 등록증 발급업무(신설 2015. 5. 1)
- 31. 장학금 운영계획 수립 및 장학금 업무총괄
- 32. 대외 장학재원 확대 방안 수립
- 33. 국가 및 교내외 장학금 지급 및 관리
- 34. 국가 근로장학생 선발 및 관리
- 35. 장학위원회 운영 및 관리
- 36. 장학생 선발 및 관리
- 37. 장학금 지급 실적 및 통계 관리 업무
- 38. 각종 학자금 융자 관련 업무
- 39. 기타 장학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40. 기타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목개정 2023. 2. 17]

제31조의 2 <삭제 2015, 5, 1>

제31조의 3 <삭제 2015. 5. 1>

제31조의 4 (장애학생지원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3. 7. 22)

- 1.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 지원
- 2.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제공
- 3. 교직원 · 보조인력 등에 대한 교육
- 4.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운영
- 5.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31조의 5 (Caritas봉사센터) Caritas봉사센터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16, 2, 29, 개정 2017,

- 5. 1 조이동 2018. 12. 12, 2019. 03. 28)
- 1. 사회봉사사업의 총괄 계획 수립
- 2. 사회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
- 3. 호서봉사단 운영, 관리, 지원
- 4. 사회봉사활동원 모집, 교육 등의 지원, 관리
- 5. 사회봉사 활동기관의 선정 및 교섭, 협약체결
- 6. 사회봉사 활동에 관한 홍보, 출판
- 7. 사회봉사 실적 관리
- 8. 봉사센터운영위원회 운영
- 9. Caritas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성과 평가 및 환류 지원
- 10.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27조의 10에서 이동 2018. 12. 12.]

제31조의 6 <조 이동 2023. 2. 17>

[본조신설 2020. 2. 28.]

제31조의 7 (보건진료센터) 보건진료센터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 6. 29, 조변경 2012. 10. 23, 개정 2013. 7. 22.)

- 1.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1차 진료
- 2.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 업무
- 3. 각종 의료기기, 의약품의 구입 및 관리 업무
- 4. 기타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 5.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45조의 4에서 이동 2020. 11. 9.]

제 9 절 입 학 처(절 변경 2015. 5. 1)

제32조 (입학팀) 입학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 10. 23, 조변경 2012. 10. 23, 2012. 12. 4, 조변경 2015. 5. 1., 2023. 2. 17)

- 1. 입학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 2. 입학상담실 운영 및 관리 업무
- 3. 입시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및 자료수집
- 4. 입학전형의 관리 및 운영
- 5. 입학에 대한 결과분석 및 통계작성
- 6. 입학관련 각종자료 구축
- 7. 신입생 장학제도 연구
- 8.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시행
- 9. 입시홍보 계획수립 및 시행과 입시관련 각종 광고에 관한 사항
- 10. 편입학 업무
- 11. 입학관련 소관 위원회 운영
- 12. <삭제 2023. 2. 17>
- 13.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32조의 2 (입학사정관실) 입학사정관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0. 6. 11, 조변경 2012.

- 12. 4, 개정 2019. 03. 28., 2019. 8. 1., 2023. 2. 17.)
- 1. 학생부종합전형 모형 개발
- 2. 학생부종합전형의 홍보 및 진행
- 3. 학생부종합전형에 관한 각종 자료 수집 및 정리
- 4. 주요 고등학교의 정보 수집 및 정리
- 5. 학생부종합전형 합격자의 관리
- 6. 우수인재 유치 및 선발
- 7.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32조의 3 (호서교육기부센터) 호서교육기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3. 2. 17)

- 1. 교육기부프로그램의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 2. 교육기부프로그램의 예산관리 및 집행
- 3. 고교생 대상 비교과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 수집 및 프로그램 개발
- 4. 교육기부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 5.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본조신설 2019. 8. 1.]

제 10 절 사 무 처(절 변경 2019. 8. 1., 2020. 11. 9.)

제33조 <삭제 2018. 5. 17>

제33조의 2 (총무팀) 총무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 10. 23, 조변경 2012. 10. 23, 2012.

- 12. 4, 개정 2014. 9. 1, 2015. 5. 1, 2016. 2. 29, 2019. 3. 28., 2023. 2. 17.)
- 1. 총장, 부총장, 사무처장 직인 관수 및 각종 직인의 등록 및 폐기 업무
- 2. 문서관리(수발, 분류, 통제, 보존, 폐기 등)
- 3. 전례의식, 기타행사 관련 의전 업무
- 4. 직원 인사(임용)관리 업무(산학협력단 직원 T/O 관리 포함)
- 5. 직원 복무에 관한 관리(출·결근, 휴가, 출장 등)
- 6. 제증명 발급(직원)
- 7. 우편취급국 운영 및 우편물 관리
- 8. 교직원의 후생복지(휴양시설, 식당 등) 관련 업무
- 9. 직원 교육 훈련 및 연수 업무
- 10. 교직원의 사학연금 및 4대보험에 관한 업무
- 11. <삭제 2012. 10. 23>
- 12. 사무 인계인수 관련 업무
- 13. <삭제 2009. 3. 1>
- 14. 노동조합 관련 업무
- 15. 서무관계 제반 통계업무
- 16. 총무 관련 소관 위원회 운영 업무
- 17. 보안 및 비상업무
- 18.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
- 19. 상조회 지원 업무
- 20. 직원평가 관련 업무
- 21. 직원 상벌에 관한 업무
- 21.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35조에서 이동 2020. 11. 9.]

제33조의 3 (연구실안전관리센터) 연구실안전관리센터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 6. 29, 조변경 2012. 10. 23.)

- 1. 연구실 안전관리 정책 및 연구 개발
- 2. 연구실 책임자 및 안전 관리 담당자의 지정에 관한 업무
- 3. 연구 활동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 수립 및 실시 업무 주관
- 4. 연구실 안전 점검 · 정밀안전진단 계획 수립 및 실시 업무 주관
- 5. 사고 발생시 사고조사 및 보상 관련 업무 주관
- 6. 안전교육, 점검, 진단 및 사고조사 T/F팀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지원
- 7. 보호 구, 보호 장비, 안전시설 등의 구입, 설치 및 유지 보수에 관한 업무
- 8. 연구실 안전관리 전반에 걸친 행정 업무
- 9.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45조의 8에서 이동 2020. 11. 9.]

제33조의 4 (안전관리팀) 안전관리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 8. 25., 2023. 2. 17)

- 1. 일반관리 : 시설물 보수 및 대여, 행사지원 등
- 2. 냉난방 관리 : EHP 및 보일러 관리

- 3. 환경. 상하수도. 폐기물 관리 업무
- 4.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 : 기관실, 설비 등
- 5. 영선 및 위생시설 관리: 정수기, 소독(방역) 등
- 6. 시설물 유지보수 용역 관리 : 시설, 경비, 청소(미화) 등 시설용역 관리
- 7. 조경관리 : 조경시설 및 공사 관리
- 8. 물품관리 검수: 자산관리, 재물조사 검수 업무
- 9. 안전관리 업무 : 중대재해 예방관리 및 계획 수립, 각종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의 날 운영, 안전훈련 등
- 10. 주차관제 시스템 운영 관리
- 11. 결정된 공간의 회수 및 공간 사용료 징수
- 12.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본조신설 2020. 11. 9.]

제33조의 5 (시설팀) 시설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시설 장기계획 수립 및 관리: 도시계획 인허가 관리, 각종(환경,교통,재해)영향 평가 관리
- 2. 신증축 공사 업무: 건축 인허가, 신.증축 공사관리(건축,토목,전기,통신,소방,EHP)
- 3. 건축물 유지관리 공사 업무 : 시설물 안전등급 관리
- 4. 소방시설/공사 관리 업무 : 소방계획서 수립 및 관리
- 5. 전기,EHP 시설/공사 관리 업무: 변전실 등 전기설비 관리
- 6. 통신시설/공사 관리 업무 : 교내 통신시설 및 교환실 관리
- 7.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본조신설 2020, 11, 9.]

제34조 <삭제 2014. 1. 13>

제 10 절의 2 재 무 처(절 신설 2020. 11. 9.)

제34조의 2 (구매팀) 구매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14. 1. 13, 개정 2015. 5. 1, 2019. 03. 28.)

- 1. 물품구매 업무
- 2. 각종 입찰 및 계약
- 3. <삭제 2019. 03. 28>
- 4. 시설물 임대계약 업무
- 5. 시설공사 계약, 발주 및 검사 시 입회 확인
- 6. 용역 계약
- 7. 부동산 관리(부동산 취득, 교환, 처분)
- 8. <삭제 2019. 03. 28>
- 9. 교육기자재 구입 및 비품수급계획 수립
- 10. 구매 관련 소관 위원회 운영
- 11. 산학협력단 구매에 관한 업무(신설 2015. 5. 1)
- 12.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10절 총무처에서 이동 2020. 11. 9.]

제34조의 3 (회계팀) 회계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조변경 2012. 10. 23, 2012. 12. 4, 개정 2013. 7.

- 22, 조변경 2015. 5. 1, 2019. 03. 28, 2019. 8. 1.)
- 1. 회계장부 정리 보관(세입, 세출, 현금출납부) 업무
- 2. 결산서 작성 보고 업무 (개정 2009. 3. 1)
- 3. 교직원 급료 및 강사료 지급 업무
- 4. 현금 출납 업무
- 5. 제세공과금 납부 업무

- 6. 출장비, 노임 지불 업무
- 7. 등록금 수납 및 대장정리 업무
- 8. 제증명료 및 세입세출의 현금출납 업무
- 9. 회계 관계 문서보고 및 통계작성 업무
- 10. 연말 정산 업무
- 11. <삭제 2019. 03. 28>
- 12. <삭제 2009. 3. 1>
- 13. <삭제 2009. 3. 1>
- 14. <삭제 2009. 3. 1>
- 15. 재무회계 관련 소관 위원회 운영 (개정 2013. 7. 22)
- 16. 자금계획 수립 및 자금운용 (신설 2013. 7. 22)
- 17. 회계제도 설정 및 개선 (신설 2013. 7. 22)
- 18. 유가증권 취급사무 (신설 2013. 7. 22)
- 19.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36조의 4에서 이동 2020. 11. 9.]

제 11 절 <삭제 2015. 5. 1>

제35조 <삭제 2020, 11, 9,>

제36조 <삭제 2020. 11. 9.>

제36조의 2 <삭제 2015. 5. 1>

제36조의 3 <삭제 2020. 11. 9.>

제36조의 4 <삭제 2020. 11. 9.>

제 12 절 정 보 관 리 처 <삭제 2010. 9. 15>

제37조 <삭제 2010. 9. 15>

제 13 절 인 재 개 발 처 <삭제 2023. 2. 17>

제37조의 2 <조 이동 2023. 2. 17>

제37조의 3 <삭제 2012. 6 .20>

제37조의 4 <삭제 2016. 2. 29>

제37조의 5 <삭제 2012. 6 .20>

제37조의 6 <조 이동 2023. 2. 17>

제37조의 7 <조 이동 2023. 2. 17>

제37조의 8 <삭제 2022. 8. 25.>

제37조의 9 <조 이동 2023. 2. 17>

제 14 절 연 구 처 (신설 2012. 10. 23, 개정 2013. 3. 25, 2014. 9. 1, 2015. 5. 1)

제38조 <삭제 2013. 3. 25>

제38조의 2 <삭제 2014. 9. 1>

제14의 2절 <삭제 2019. 8. 1>

제38조의 3 <삭제 2019. 8. 1>

제38조의 8 <삭제 2019. 8. 1>

제14의 3절 <삭제 2020. 11. 9.>

제38조의 9 <삭제 2020. 11. 9.>

제38조의 10 <삭제 2020. 11. 9.>

제38조의 11 <삭제 2020. 11. 9.>

제38조의 12 <삭제 2020, 11, 9,>

제38조의 13 <삭제 2020. 11. 9.>

제 15 절 대외협력처(절 신설 2023. 2. 17)

제39조 (호서브랜드디자인센터) 호서브랜드디자인센터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18. 12. 12.)

- 1. 대학 브랜드 설정 계획 수립
- 2. 교내 홍보 콘텐츠 개발
- 3. 홍보 브랜드 전략 수립
- 4.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28조의 14에서 이동 2020. 1. 28., 제38조의 10에서 이동 2020. 11. 9., 제28조 17에서 이동 2023. 2. 17] **제39조의 2 (호서브랜드미디어센터)** 호서브랜드미디어센터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20. 1. 28.)

- 1. 교내 영상미디어 홍보 전략 수립
- 2. 교내 홍보 영상미디어 개발
- 3. 영상미디어와 관련된 업무 지원
- 4.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본조신설 2020. 1. 28.]

[제38조의 11에서 이동 2020. 11. 9., 제28조의 18에서 이동 2023. 2. 17]

제39조의 3 (대외협력홍보팀) 대외협력홍보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3. 2. 17)

- 1. 대학 홍보 정책 수립
- 2. 언론 보도자료 작성 및 발송
- 3. 교내소식지 발간
- 4. 대학 홈페이지 뉴스 게재
- 5. 국내 대학(기관)과의 자매결연 업무
- 6. 국내 대학(기관)과의 교류업무
- 7. 지역주민 사업 협력 업무
- 8. 학교홍보 기념품 수급
- 9. 대학 브랜드위원회 운영
- 10. 대학 홈페이지 개발 및 유지관리 업무
- 11. 대학 공식 SNS 관리 업무
- 12. 기부금 및 기부자 관리 업무
- 13. 기금 기부자 통계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 업무
- 14.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28조의 12에서 이동 2020. 1. 28., 제38조의 12에서 이동 2020. 11. 9., 제28조의 19에서 이동 2023. 2. 17] [제목변경 2023. 2. 17]

제 16 절 국제협력처(절 신설 2023, 2, 17)

제40조 (국제협력원) ① 국제업무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 6. 20, 조변경 2012. 10. 23, 개정 2013. 3. 25, 2017 . 5. 1., 2023. 2. 17)

- 1. 외국 대학(기관)과의 자매결연 및 교류와 협력업무
- 2. 해외 자매대학 및 외국인 교환학생 선발과 연수에 관한 업무
- 3. 국제교류와 관련된 교직원, 학생의 해외파견 및 초청에 관한 업무
- 4. 외국과의 교신업무
- 5. 영문요람 발간 및 각종 외국어 원고 작성에 관한 사항
- 6. <삭제 2023. 2. 17>
- 7. 계절별 특강 개설 · 관리
- 8. 모의토익 운영
- 9. <삭제 2013. 3. 25>
- 10. <삭제 2023. 2. 17>
- 11. <삭제 2013. 3. 25>
- 12. HI-TESOL(영어교육자 전문양성 교육프로그램) 운영
- 13. <삭제 2010. 2. 18>
- 14. 유학생의 출입국관련 업무 (신설 2010. 2. 18)
- 15. 유학생 유치 계획 수립 (신설 2010. 2. 18)
- 16. 순수 외국인(부모양인 모두 외국인)의 입시 업무 처리
- 17. <삭제 2023. 2. 17>
- 18. 유학생 관련 행사 기획 (신설 2010. 2. 18)
- 19. 유학생 등록지도 및 기타 학생지도 업무 (신설 2010. 2. 18)
- 20. 유학생 유치 및 관리(신설 2015. 5. 1)
- 21. 한국어학당 운영(외국인학생 한국어 연수과정)(신설 2015. 5. 1)
- 22. <삭제 2023. 2. 17>
- 23. 외국인교원 민원의 처리 및 통ㆍ번역 서비스
- 24. 외국인 교원 출입국 관련 업무
- 25.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 ② <삭제 2013. 3. 25>

[제43조 4에서 이동 2023. 2. 17]

제40조의 2 (유학생상담센터) 유학생상담센터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유학생(한국어학당 학부 대학원 교환학생 모두포함) 관련 제반 심리상담
- 2. 유학생의 고충 및 적응 상담(비자, 학점, 성적, 생활, 기숙사, 한국학생과의 관계)
- 3. 유학생의 학업부진 및 애로사항 상담
- 4. 상담 이외에 유학생의 생활 및 환경적응에 필요한 사항의 기타 생활 부분 총괄 지원관리
- 5.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본조신설 2020.08.12.]

[제43조 5에서 이동 2023. 2. 17]

제 17 절 학 부(절 변경 2023. 2. 17)

- **제41조 (기초교양교육팀)** 기초교양교육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7. 11. 1, 2019. 03. 28, 2020. 2. 28., 조변경 2023. 2. 17)
 - 1. 학장 직인 관수
 - 2. 교양(인성교양, 기초교양, 일반교양), 교직, 평생교육사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관리
 - 3. 교양 및 교직, 평생교육사교육과정수업시간표 작성
 - 4. 휴강, 결강 및 보강처리

- 5. 중간 · 기말시험 관리
- 6. 교원자격무시험검정(교직졸업사정)
- 7. 교원자격증 발급(신규, 재교부, 정정, 영문)
- 8. 평생교육사자격증발급(신규,재교부, 정정)
- 9. 독서지도사, 말하기지도사 자격증 발급
- 10. 더:함교양대학 시간강사 및 조교의 임용 추천
- 11. 소속 교수(외국인 포함) · 강사의 관리
- 12. <삭제 2017. 11. 1>
- 13. <삭제 2017. 11. 1>
- 14. 교양관련 각종 상담과 서류접수
- 15. <삭제 2017. 11. 1>
- 16. 교직 학교현장실습 협력학교 관리 및 지도
- 17. 교육봉사활동 지도 및 관리
- 18. 평생교육사 현장실습 지도 및 관리
- 19. 수업행동분석실 관리 및 운영
- 20. 교양 컴퓨터 실습실 관리
- 21. 기초교양교육팀 실험실습 및 교육기자재 관리 운영과 각종 집기 및 비품의 관리, 운영
- 22. 기초교양교육팀 예산 운영
- 23. 본부 각처의 업무에 수반되는 사항
- 24. 사회봉사 관련 이론 교과목 운영
- 25.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본조신설 2017. 5. 1.]

[제27조의 13에서 이동 2017. 11. 1.]

- **제41조의 2 (교양교육센터)** 교양교육센터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조 신설 2022. 8. 25. 조변경 2023. 2. 17)
 - 1. 대학교육목표와 인재상에 부합하는 교양교육과정 연구 및 개발
 - 2. 교양교육과정 혁신을 위한 연구 및 계획 수립 등
 - 3. 교양교육과정 질 관리 체제 연구 및 실행
 - 4. 교양교육 교과/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 5.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 **제41조의 3 (미래융합대학 행정지원팀)** 미래융합대학 행정지원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조변경 2023. 2. 17)
 - 1. 종합행정팀 사무분장(본 규정 39조) 업무
 - 2. 계약학과 운영관리
 - 3.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 업무(사업예산 및 회계관리, 사업성과평가 및 환류, 사업추진위 원회 및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지원)

[본조신설 2019. 5. 14]

- 제41조의 4 (미래융합대학 성인학습지원센터) 미래융합대학 성인학습지원센터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조변경 2023, 2, 17)
 - 1. 성인학습자 친화적 교수학습방법 개발 및 보곱
 - 2. 성인학습자 상담 및 지원
 - 3. 성인학습자 학습이력관리 및 경력개발지원
 - 4. 성인학습 패러다임에 대한 학내 구성원 이해 제고 및 동참유도

[본조신설 2019. 5. 14]

제41조의 5 (아산캠퍼스 종합행정팀) 아산캠퍼스 종합행정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조변경 2023. 2. 17)

- 1. 학장 추천서 발급
- 2. 학장 직인/도장 관리
- 3. 아산캠퍼스 단과대학 실험실습 및 교육기자재 관리 운영과 각종 집기 및 비품의 관리, 운영
- 4. 수업기가재 불출 및 관리, 수업관련 소모품 신청 및 수발 업무
- 5. 아산캠퍼스 단과대학 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
- 6. 아산캠퍼스 단과대학 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
- 7. 시간강사 임용 추천 지원
- 8. 아산캠퍼스 조교 근태 관리
- 9. 아산캠퍼스 조교 간담회 관리
- 10. 아산캠퍼스 실습조교/연구조교 임용지원(추천)
- 11. 아산캠퍼스 단과대학 운영비 관리
- 12. 아산캠퍼스 단과대학 전체 교수회의, 학과장 회의 지원
- 13. 아산캠퍼스 단과대학 공문 접수
- 14.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본조신설 2020, 11, 9.]

제41조의 6 (천안캠퍼스 종합행정팀) (개정 2021. 3. 9.) 천안캠퍼스 종합행정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조변경 2023. 2. 17)

- 1. 총장 직인(민원용) 관리
- 2. 학장 직인/도장 관리
- 3. 단과대학 예산(운영비) 관리
- 4. 단과대학 발전계획 수립(발전기금 조성) 및 추진 운영
- 5. 학과(전공)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과 전공과목 수업시간표 작성, 전공강의실 배정, 공결원 처리, 수업 확인
- 6. 휴강, 결강 및 보강처리
- 7. 중간 · 기말시험 관리
- 8. 졸업사정, 졸업논문 및 졸업종합시험 관리, 조기졸업,학사학위취득유예관리,이수과목변경, 대체과목, 타전공인정신청
- 9. 단과대학 학장 추천서
- 10. 단과대학 명예의 전당 장학생 및 포상자 추천, 관리
- 11. 시간강사 임용 추천지원
- 12. 소속 교수・강사의 관리
- 13. 교육/실습/연구조교 임용지원(추천)
- 14. 교육(행정)조교 근태관리
- 15. 휴학 · 복학 · 자퇴원서 접수, 입력, 보관
- 16. 자퇴에 따른 등록금 반환 업무
- 17. 학사/학적관련 각 종 상담과 서류 수합
- 18. 학생지도 · 상담 ·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 19. 실험실습 및 교육기자재 관리 운영과 각종 집기 및 비품의 관리, 운영
- 20. 수업 기자재 불출 및 관리, 수업관련 소모품 신청
- 21. 제증명발급
- 22. 단과대학 전체교수회의, 학과장 회의 운영
- 23. 단과대학 행사지원 물품구매/행사 관리
- 24. 본부 각 처의 업무에 수반되는 사항
- 25.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본조신설 2020. 4. 14.]

[제목개정 2020. 11. 9., 제30조의 5에서 이동 2020. 11. 9.]

제41조의 7 (산학융합캠퍼스 종합행정팀) (조변경 2023, 2, 17)

- 1. 학과(전공)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과 전공과목 수업시간표 작성
- 2. 수강신청 지원, 전공강의실 배정, 수업 확인, 결·보강 신청서 접수, 공결원 처리, 수업계획서/수업반응도 관리
- 3. 계절학기 교과목신청서 접수
- 4. 시험 관리에 관한 업무
- 5. 학적(휴복학, 자퇴, 등록금반환 등) 업무
- 6. 제적(미등록, 미복학, 학사경고 상담 등) 업무
- 7. 재입학 상담, 서류 수합 등 관련업무
- 8. 졸업사정, 졸업연기, 조기졸업, 이수과목변경, 대체과목, 타전공인정 신청/재수강 신청서 접수, 졸업종합시험 관련 등
- 9. 졸업사정위원회 지원
- 10. 학장 추천서 및 제증명 발급
- 11. 시간강사 임용 추천 지원
- 12. 산학융합캠퍼스 조교 근태, 조교 간담회 관리
- 13. 산학융합캠퍼스 실습조교/연구조교 임용지원(추천)
- 14. 학장 직인/도장 관리
- 15. 산학융합캠퍼스 운영비 관리
- 16. 산학융합캠퍼스 전체 교수회의, 학과장 회의 지원
- 17. 산학융합캠퍼스 공문 접수
- 18. 산학융합캠퍼스 실험실습 및 교육기자재 관리 운영과 각종 집기 및 비품의 관리, 운영
- 19. 수업기자재 불출 및 관리, 수업관련 소모품 신청 및 수발 업무
- 20. 행사지원 물품구매/행사관리
- 21. 학교행사 지원
- 22. 산학융합캠퍼스 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
- 23. 산학융합캠퍼스 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
- 24. 학생협의회 및 학생지도 업무
- 25. 통학버스 운행업무
- 26. 장학생 및 포상자 추천과 관리
- 27. 장학금 집행 및 관리 업무
- 28. 근로장학생 모집 및 운용
- 29. 해외봉사 진행 업무
- 30. 의약품 구매 및 관리
- 31. 의약품 불출
- 32. 공간조정 및 관리
- 33. 안전관리점검업무(실험실, 대학원생실 등)
- 34. 시설보수 의뢰서 및 민원 접수
- 35. 강의실, 운동장 시설물 대관 접수 및 안내
- 36. 구매의뢰 물품검수처리 및 등록, 자산시스템 데이터 관리
- 37. 재물조사 데이터정리(미확인, 초과물품, 결과표)
- 38. 최고경영자과정, 학점은행제 독학사과정 운영
- 39.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 40.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본조신설 2020. 4. 14.]

[제목개정 2020. 11. 9., 제30조의 6에서 이동 2020. 11. 9.]

제 18 절 대 학 원(절 변경 2023. 2. 17)

제42조 (일반·특수·전문대학원 교학팀) 대학원의 각 교학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조변경 2012.

- 10. 23., 2023. 2. 17)
- 1. 원장 직인 관수
- 2. 학사운영의 기본계획 수립
- 3. 학생모집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4. 학생정원 관리
- 5. 입학에 관한 사항
- 6.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 7. 수업시간표 직성 및 수업(실험실습 포함) 진행 관리
- 8. 학적부 작성 및 관리
- 9. 교과과정 연구 및 강좌 설치 편성 운영
- 10. 교・강사 출강 관리
- 11. 수강신청 및 등록대상자 관리확인
- 12. 학생증 및 학생관련 제증명 발급
- 13. 휴학 및 복학에 관한 사항
- 14. 학사관계 제 통계 및 보고
- 15. 외국어시험, 종합시험 관리 및 각종 시험에 관한 처리
- 16. 학위청구논문 심사 관리
- 17. 장학관계 업무
- 18. 대학원 요람 발간(한글, 영어)
- 19. 대학원 관련 연구과정 운영
- 20. 대학원 관련 소관 위원회 운영
- 21.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 19 절 부 속 기 관(절 변경 2023. 2. 17)

제43조 (중앙도서관 학술팀) 중앙도서관 학술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조변경 2012. 10. 23, 2015.

- 5. 1, 개정 2016. 2. 29, 2019. 03. 28., 2023. 2. 17., 조변경 2023. 2. 17)
- 1. 도서관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 2. 중앙도서관 규정 관리
- 3. 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
- 4. 도서관 예·결산
- 5. 도서관 통계 및 평가 관리
- 6. 도서관 직원교육
- 7. 장서개발 및 자료 구입·교환·수증 업무
- 8. 자료 분류 및 편목
- 9. 자료 대출·반납 및 열람
- 10. 장서관리
- 11. 이용자 관리
- 12. 연속간행물 구입·관리

- 13. 전자자료 구입·관리
- 14. 대학생산 정보수집 및 원문구축
- 15. 연구·학습지원 서비스
- 16. 상호대차 및 원문복사 서비스
- 17. 도서관 이용 교육
- 18. 독서·문화프로그램 기획·운영 (갤러리 포함)
- 19. 도서관 공간 및 시설 관리
- 20. 도서관시스템 운영·관리
- 21. 대학도서관 상호협력 및 교류
- 22.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43조의 2 (전산운영팀) 전산운영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조변경 2023. 2. 17)

- 1. 대학정보화 기본정책 및 발전계획 수립
- 2.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3. 협업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원
- 4. 통합정보시스템 및 협업시스템 데이터 관리
- 5. 홈페이지 운영에 대한 기술적 지원
- 6. 정보화교육지원 업무
- 7. 소관 위원회 운영
- 8. 기타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본조신설 2020. 11. 9.]

제43조의 3 (정보보호팀) 정보보호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조변경 2023. 2. 17)

- 1. 정보보호 기본정책 수립
- 2. 인프라(시스템,네트워크)구성 정책 수립
- 3. 교육망/연구망 관리
- 4. 정보보안 업무
- 5. 개인정보보호 기술적 보호조치 업무
- 6. 불법 소프트웨어 점검 업무
- 7. 공용 소프트웨어 관리
- 8. 헬프데스크 운영
- 9. 각종 정보화기기 관리 및 운영 지원
- 10. 소관 위원회 운영
- 11. 기타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본조신설 2020, 11, 9.]

제43조의 4 (LMS지원센터) LMS지원센터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조변경 2023. 2. 17)

- 1. 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실적, 예 · 결산 보고
- 2. 학습관리시스템(LMS) 계약 및 서비스 변경
- 3. 학습관리시스템(LMS) 운영 교과목 관리 및 서비스 지원
- 4. 학습관리시스템(LMS) 상의 비교과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
- 5. 학습관리시스템(LMS) 민원 처리
- 6. 센터 운영에 관한 통계분석, 기록물 관리

[본조 신설 2021. 3. 9.]

제43조 5(평생교육원 교학팀) 평생교육원 교학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조변경 2012. 10. 23, 개정 2017. 11. 1., 조변경 2023. 2. 17)

- 1. 원장 직인 관수
- 2.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3. 수업계획 및 진행
- 4. 학생모집 및 홍보활동
- 5. 각종 행사에 관한 업무
- 6. 감독관청 관계사무
- 7. 입학 및 졸업에 관한 업무
- 8. 제증명 발급
- 9. 각종 시험관리 업무
- 10. 출석부 관리
- 11. 학적 관리
- 12. <삭제 2017. 11. 1>
- 13. 어린이집 관리감독 업무
- 14. 보육교사교육원 관리감독 업무
- 15. 평생교육원 소관 위원회 업무
- 16.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 **제43조 6 (자연사박물관)** 자연사박물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 6. 20 조변경 2012. 10. 23., 2023. 2. 17)
 - 1. 자연사관련 자료의 수집, 관리, 보존, 및 전시
 - 2. 전문서적과 각종 사진의 비치
 - 3. 본 대학교 사료의 수집, 정리
 - 4.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 **제43조 7 (생활관)** 생활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조변경 2012. 10. 23, 개정 2020. 2. 28., 조변경 2023. 2. 17)
 - 1. 생활관 운영에 관한 업무
 - 2. 생활관 입ㆍ퇴사에 관한 업무
 - 3. 관생 행사 및 지도에 관한 업무
 - 4. 비품 및 시설물 관리에 관한 업무
 - 5. 관생 상벌에 관한 업무
 - 6. 생활관 운영위원회에 관한 업무
 - 7. 생활관생 상담 업무
 - 8.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 **제43조의 8 (교육연수원)** 교육연수원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 6. 29, 조변경 2012. 10. 23., 2023. 2. 17)
 - 1. 초·중등 교원 연수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2. 초·중등 교원 일반·자격·직무·부전공 연수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 3. 시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4. 논술·환경·인성·열린교육방법 등 교육개발에 관한 사항
 - 5. 교육 지원 자료 제작 및 배포 업무
 - 6. 기타 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항
 - 7.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 **제43조의 9 (출판부)** 출판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 6. 29, 조변경 2012. 10. 23., 2023. 2. 17)
 - 1. 교내 각 기관 출판 의뢰 사항
 - 2. 교내 각종 학술도서, 교재, 논문집, 기타 간행물의 출판 업무

- 3. 신앙서적 및 고대문헌 번역출판 업무
- 4. 출판물에 관한 조사연구 및 조정
- 5. 출판물의 보관 및 배포 업무
- 6. 출판에 따른 수익 관련 사항
- 7. 출판기금 관리 업무
- 8. "호서대학교" 교명(로고)을 사용하는 도서 및 비도서 출판물 관장 업무
- 9.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 **제43조의 10 (대학언론사)** 대학언론사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 6. 29, 조변경 2012. 10. 23., 2023. 2. 17)
 - 1. 대학언론사의 기본 계획 수립 및 시행
 - 2. 대학언론사 운영 및 관리 업무
 - 3. 대학언론사의 수습기자 선발 교육 및 기자임용에 관한 업무
 - 4. 대학 신문의 제작, 발행, 배포 및 발송
 - 5. 교내·외 공익광고 게재에 관한 업무
 - 6. 방송편성 및 방송지도업무
 - 7. 방송 기자재 관리 업무
 - 8. 교내·외 각종 뉴스와 학술활동 소개 업무
 - 9. 교지제작, 발행지도에 관한 업무
 - 10.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 제43조의 11 (생활체육지도자연수원) 생활체육지도자연수원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2. 6.
 - 20, 조변경 2012. 10. 23., 2023. 2. 17)
 - 1. 연수교육계획 수립과 교육 진행
 - 2. 연수생 등록 및 수업관리
 - 3. 교육용 기자재 관리 및 교과목 편성
 - 4. 강사선정 및 초빙
 - 5. 교육결과의 분석 및 평가관리
 - 6. 연수위탁교육 및 상담
 - 7.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 제43조의 12 (ART SPACE HOSEO) ART SPACE HOSEO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3. 7.
 - 22, 개정 2015. 4. 20., 조변경 2023. 2. 17)
 - 1. 순수미술 작품 및 문화콘텐츠 작품 연구 개발 업무
 - 2. 전시회, 공연 및 세미나 개최 등 각종 연구진흥 업무
 - 3. 산·학·연 협동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
 - 4.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 운영
 - 5. 기타 아트스페이스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운영
 - 6.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 제43조의 13 (호서대학교 직장어린이집) 호서대학교 직장어린이집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조 변경 2023. 2. 17)
 - 1. 어린이집 운영 계획 수립
 - 2. 어린이집 영유아 관리
 - 3. 어린이집 행정제반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7. 11. 1]

제43조 14 (예비군연대) 예비군연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2. 10. 23, 개정 2014. 9. 1,

2019. 03. 28. 조변경 2023. 2. 17)

- 1. 예비군 업무
- 2. 민방위 업무
- 3. 학적 업무
- 4. <삭제 2019. 03. 28>
- 5. <삭제 2019. 03. 28>

제43조 15 (기타 기관) 기타 기관의 사무분장은 각 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관사무 수행에 적합하도록 정한다. (개정 2009, 3, 1, 조변경 2012, 10, 23, 2023, 2, 17)

제 20 절 부 설 연 구 소(절 변경 2023. 2. 17)

제44조 (부설연구소) 부설연구소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조변경 2012. 10. 23, 2023. 2. 17)

- 1. 각 연구소별 계획된 사업 추진
- 2.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 21 절 특 화 사 업 단(절 변경 2023. 2. 17)

제45조 (기금사업단) 기금사업단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4. 1. 13, 조변경 2023. 2. 17)

- 1. 기금조성계획 수립
- 2. 기금관련 상품개발 업무
- 3. 기금 규정 및 위원회 운영
- 4. 기금홍보 유치 업무
- 5. 대 동문 관리 업무
- 6. 기금 홈페이지 운영관리 업무
- 7. 기타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45조 2 (교육환경개선사업단) 교육환경개선사업단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 5. 1, 조변 경 2023. 2. 17)

- 1. 교육환경 개선 계획 수립
- 2. 교내외 교육환경 개선 · 개발 업무
- 3.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캠퍼스 공간배치 및 활용에 관한 업무
- 4. 교내외 교육환경 개선 관련 위원회 운영
- 5. 교육환경 개선 관련 정보 수집 및 분석
- 6.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 22 절 미래혁신융합교육원 <절 신설 2020. 2. 28>

제46조 (미래혁신융합교육원) 미래혁신융합교육원에는 융합교육개발센터, 융합교육가치확산센터, 융합교육성과관리센터를 두며,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주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 ① 융합교육개발센터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 1. 미래혁신융합교육 운영지원 및 융합교과목 신규개발
- 2. 온라인 융합교육과정 운영
- 3. 융합교육·체험 프로그램 개발 운영
- ② 융합교육가치확산센터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융합교육 관련 협의회 운영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 2. 개발된 융합 교육의 지역사회, 산업현장, 글로벌 확산
- ③ 융합교육성과관리센터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융합교육과정 연구 및 교육성과 분석 및 환류 [본조신설 2020. 2. 28]

제 23 절 국책사업단 <절 신설 2020. 11. 9.>

- 제47조 (AI·SW중심대학사업단) AI·SW중심대학사업단에는 AI·SW중심대학사업운영팀, 교육혁신 본부, 산학교육본부를 두며, 팀장은 주사 이상으로 본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주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 ① AI · SW중심대학 사업운영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SW중심대학 관련 행정지원 및 운영
 - 2. 제위원회 지원
 - 3. 각 본부 관리 및 업무지원
 - ② 교육혁신본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In & Out 문제해결 교육과정 개발 운영
 - 2. 전공 학생들의 전공역량 관리
 - 3. 기초교육 과정 개발 운영
 - 4. 대학 내 확산 프로그램 운영
 - 5. 학과 및 전공 AI교과목 개발 지원
 - 6. AI·SW 연계전공 교육과정 개발 운영
 - 7. AI·SW 융합트랙 교육과정 개발 운영
 - 8. 온라인·오프라인 AI · SW교육과정 운영
 - 9. 청소년 등 대상의 AI·SW교육·체험 프로그램 개발 운영
 - 10. SW중심대학협의회 참여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 ③ 산학교육본부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산업체 업무협약
 - 2. 산업체 수요조사
 - 3. 장 · 단기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 4. 산학협동 공동프로젝트 운영
 - 5. 취·창업 교육프로그램 운영

[본조신설 2020. 1. 28.]

[제52조에서 이동 2020. 11. 9.]

제47조 2(대학혁신지원사업단) 대학혁신지원사업단에 대학혁신팀을 두고, 팀장은 주사 이상으로 보한다.

[본조신설 2020. 11. 9.]

- **제47조 3 (대학혁신팀)** 대학혁신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0. 8.12., 2020. 9. 8., 2020. 11. 9., 20 23. 2. 17)
 - 1.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총괄 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 2. 대학혁신사업의 운영 및 지원·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
 - 3. 대학혁신지원사업 관련 제반서류 및 자료의 수집·정리·평가·분석의 업무
 - 4. 대학혁신사업 관련 운영위원회 등 제위원회 관리에 관한 업무
 - 5. 사업진행에 관한 각종 평가준비 및 대응에 관한 업무
 - 6. 호서특성화지원사업 추진 관리 업무
 - 7. 기타 각 사항에 부수되는 업무

[본조신설 2019. 8. 1]

[제목개정 2020. 11. 9., 제28조의 15에서 이동 2020. 11. 9.]

제47조 4(LINC3.0사업단) LINC3.0사업단은 효율적인 운영 및 내실있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업운영

- 팀, 기업협업본부(특화ICC센터, 기업협력센터, 공유협업센터), 혁신인재양성본부(HIT인재교육센터, 취·창업교육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로 구성하며, 사업단장은 대학의 교무위원급으로 호서대학교 총장이 임명하고, 각 본부 및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을 사업단장 추천으로 호서대학교 총장이 임명하다.(개정 2023, 6, 15.)
- ① 사업운영팀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 1. LINC3.0사업단 및 대학과 연계한 성과 관리
- 2. 사업단의 운영 지원, 회계 관리, 자금 및 물품관리
- 3. 사업실적 관리
- ② HIT인재교육센터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 1. 산학친화형 및 산학연계형 교육과정 운영
- 2. 융합교육 및 산학교육 과정 개선
- 3. 학사업무 지원
- ③ 현장실습지원센터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 1. 재학생 현장실습 운영
- 2. 취업프로그램 운영
- ④ 취·창업교육센터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3. 6. 15.)
- 1. LINC3.0사업단 내 취·창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
- 2. 교육혁신처와 연계협력을 통해 대학 내 취·창업교육 지원·공동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
- 3. 기타 각 사항에 부수되는 업무
- ⑤ 기업협력센터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 1. ALL-SET기업지원,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프로그램
- 2. 산학협력협의회 운영
- 3. 특화분야별 기업지원,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 ⑥ 특화ICC센터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 1. 3대 특화분야(반도체디스플레이, 스마트시티, 바이오헬스)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 2. 3대 특화분야(반도체디스플레이, 스마트시티, 바이오헬스)기술개발 프로그램 운영
- ⑦ 공유협업센터는 다음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23. 6. 15.)
- 1. LINC3.0사업단 내 산학연 연계 공유협업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
- 2. 특화ICC센터와 협업을 통한 지자체 연계 ICC 프로그램 기획·운영·지원에 관한 제반 업무
- 3. 지자체-혁신기관-대학 간 공유협의체 구성 및 운영 업무
- 4. 기타 각 사항에 부수되는 업무

[본조신설 2023. 2. 17]

부 칙

이 규정은 198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199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3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3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츼
이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0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0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1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2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2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2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3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3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칙 이 규정은 2014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칙 이 규정은 2014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칙 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4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5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5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칙 이 규정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칙 이 규정은 2016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6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칙 이 규정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칙(2017. 6. 20)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칙(2017. 11. 1)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칙(2018. 5. 17)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칙(2018. 6. 15)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03.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칙(2018. 7. 11)

칙(2018. 12. 12)

제2조(경과조치) 제28조의 11 평가전략팀 업무분장 중 대학특성화 지원사업 종료에 따른 사업종료 관리는 평가전략팀에서 수행하도록 한다.

부 칙(2019. 5. 14)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8. 1)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8. 1.)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10. 28.)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 28)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내부결재에 의해 결정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20, 2, 28)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4. 14.)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8.12.)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9. 8.)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1. 9.)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3. 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5. 27)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6, 30)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8. 25.)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권센터 적용례) 인권센터의 경우 제3조2항 및 제25조1항의 적용은 2022년 2월 9일로 소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LINC3.0사업단 적용례) LINC3.0사업단의 경우 제47조의 4의 적용은 2022월 5월 1일부터 소급한다. 제3조 (2022.08.0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적용례) 제28조의 6, 제28조의 11, 제28조의 12, 제47조의 3의 적용은 2022년 8월 1일부터 소급한다.

부 칙(2023. 6. 15.)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첨 2

기본연구소(개정 2017. 5. 1, 2018. 12. 12, 2019. 5. 14, 2019. 10. 28, 2019. 1. 28., 2020. 8. 12.,2021. 10. 1., 2023. 2. 17.)

- 1. 기초과학연구소
- 2. 공업기술연구소
- 3. AI융합연구소
- 4. 문화·예술·스포츠 융합연구소
- 5. 인문사회과학연구소
- 6. 경영연구소
- 7. 미래융합기술연구소

교책연구소(신설 2011. 3. 1, 개정 2015. 5. 1, 2016. 12. 10, 2018. 12. 12. 2019. 8. 1., 2020. 11. 9, 2021. 5. 27.)

- 1. 해양IT융합기술연구소
- 2. 바이오의과학연구센터
- 3. 스마트경영연구센터
- 4. 빅데이터연구센터
- 5. AI디자인연구센터
- 6. 한국에센셜오일소재연구소

일반연구소 (개정 2018. 12. 12, 2019. 03. 28, 2019. 5. 14., 2020.08.12., 2020. 11. 9. 2021. 10. 1., 2022.

- 8. 25., 2023. 2. 17., 2023. 6. 15.)
 - 1. 통일문제연구소
 - 2. 화학기술개발연구소
 - 3. 법학연구소
 - 4. 음악음향연구소
 - 5. 경제연구소
 - 6. 전기에너지신기술연구소
 - 7. 뉴미디어연구소
 - 8. 상호작용미디어연구소
 - 9. 위해성 평가연구센터
 - 10. 청소년리더십개발원
 - 11. CPQ(문화프로듀서)센터
 - 12. 뷰티&웰빙센터
 - 13. <삭제 2023. 2. 17>
 - 14. 바이오칩연구센터
 - 15. HS 사회복지연구개발센터
 - 16. 산삼연구소
 - 17. 골프문화전략연구소
 - 18. 비만·당뇨연구소
 - 19. 노년문화연구소
 - 20. <삭제 2023. 2. 17>
 - 21. 메디칼뷰티연구소
 - 22. 고중세문헌연구소

- 23. 에코푸드연구소
- 24. 벤처·MOT연구소
- 25. 지식기술융합연구소
- 26. 디지털팩토리연구소
- 27. 호서온천연구소
- 28. 보건산업연구소
- 29. 디지털비즈니스연구센터
- 30. 글로벌신소자연구소
- 31. 수소인프라연구소
- 32. 화장품과학연구소
- 33. 사이버안보연구소
- 34. 국제화장품연구소
- 35. 융합기술연구소
- 36. 차세대에너지연구소
- 37. 글로벌기술사업화지원연구소
- 38. 국방융복합기술연구소
- 39. <삭제 2023. 2. 17>
- 40. HCP건강증진연구소
- 41. 스마트헬스케어융복합연구센터
- 42. 자율주행기초연구센터
- 43. 미래기술전략연구원
- 44. 펫로스(Pet Loss)센터
- 45. 메타버스, 핀테크연구소
- 46. AI+X연구센터

산학연구소(개정 2019. 10. 28., 2020.08.12. 2021.10.01., 2023. 2. 17.)

- 1. 환경바이오연구센터
- 2. 산업안전기술연구센터
- 3. 호서벤처창업보육센터
- 4. <삭제 2023. 2. 17>
- 5. 디스플레이기술교육센터
- 6. <삭제 2023. 2. 17>
- 7. 벤처디자인연구센터
- 8. 지열인력양성센터
- 9. 호서산업교육개발원
- 10. GLP센터
- 11. 문화데이터환경기술연구소
- 12. 환경에너지연구소